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통시적 고찰

권오경 · 김남희 · 김혜빈*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선행연구 검토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 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이
 - 3.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내용
 - 3.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변화 과정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정책 과제 분석
 - 4.1 정책 추진 체계
 - 4.2 국제결혼
 - 4.3 결혼이민자
 - 4.4 다문화가족
 - 4.5 다문화수용성
5. 결론 및 제언

<Abstract>

Kwon, oh-kyung · Kim, nam-hee · Kim, hye-bin. 2022. 02. 20.

* 공동 제1저자 : 권오경, 김남희, 김혜빈

A diachronic study of the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0, 31-64. This study examines the first, second, and third basic plan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The change process is classified into policy promotion system, international marriage,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purpose is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accordingly.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a control tower, supplementation of post-management policy for international marriage damage, expansion of educational support for spouses of marriage immigrants, expansion of discretion of Healthy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education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point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ternational Marriage,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사회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문화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2000년 중반 이전까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에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농촌 층각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국제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국가 간의 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결혼이민자의 수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다문화정책 역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홍규호 2017: 1).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은 1,986,213명¹⁾으로 내국인 대비 외국인 수가 3.83%에 달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도래하였음을 의미한
다.²⁾ 그 만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1차에서 3차까지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한국에 거주
하는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줄이
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진단하는 일
이 필요하다(권오경 2018: 10).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법」을 토대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과
정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 간의 상호 비교대
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2021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2) 외국태생 인구비율에 의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규정은 최저 3%부터 5%
이상으로 논자마다 그 규정이 다른데, 이는 동 비율 구분이 이전 누적
된 다문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 따라 체류 외국인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다문화사회 기준
을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수를 3%로 규정한다(신은주 2012:
325).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김영숙 외(2012), 김준식 외(2012)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김영숙 외(2012)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언어교육 기회 지원, 경제 생활지원, 다문화가정 보호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의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준식 외(2012)는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추진주체,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대상, 추진방법, 추진시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진주체 측면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핵심주체로서 그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추진목표 측면으로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사후관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차원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추진대상에 대하여는 현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특징 파악에 관심을 기울여 정책 대상의 범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추진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와 홍보 강화, 그리고 추진시기로는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로서, 조현상(2013)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들이 국가에 의한 주도적인 ‘다문화가족 만들기’라고 규정하며 제2차 기본계획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1차와 2차 기본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제2차 기본계획은 1차에 비해 정책지향적인 면에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추진과제들이 현실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고, 정책 과제 6대 분야의 모순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본계획의 집행과 관련된 기관의 중복성을 없애고 총괄 기구를 해결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의 정부 정책으로 포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김혜순(2017)은 제1,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제1차, 2차 기본계획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이민정책임을 확인하였으며, 3차 기본계획 역시 이민배경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의 재고와 정책 주류화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물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재까지 시행이 완료된 제1차, 2차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과 개선사항 등은 도출되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제3차 기본계획과 관련한 연구가 시급히 고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3차 기본계획이 현재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1차 및 2차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지속성, 시대성, 그리고 1,2차 기본계획 개선점의 반영 정도 등을 확인하고 3차 기본계획 시행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기본계획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상에 발맞추어 적절한 다문화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1차부터 제3차까지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개정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게 되자 2008년 3월 21일에 법률 제8937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 당시부터 2021년 현재까지 12번의 일부개정 및 타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 흡수되었던 여성가족부가 다시 분리되면서 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타법개정이 이루어진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계의 지지를 받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흡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으나 2010년 3월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가 많은 것에 비하여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년과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관할 부서가 변경되면서 2008년 1월 18일 법률 제9932호로 타법개정이 된다.

2011년 4월 4일에는 법률 제10534호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확대와 부서 및 계획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개정 전까지는 다문화가족은 「국적법」의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만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국적법」의 제2조를 포함하여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까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정의의 확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3조의2, 3, 4가 신설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4(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을 법적으로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제4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실태조사는 법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을 하였으나, 개정 이후 외국인정책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아동까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밖에도 제5조 2항에 법적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에서 기존 항목은 직업교육과 훈련만 지원을 하였지만, 개정 이후 한국어교육을 포함하고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방문교육과 원격교육 지원 및 교재와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9조는 개정 전에는 ‘산전·사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항목이었으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출산’에 맞추었던 초점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한 지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사업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012년 2월 1일에는 법률 제11284호 일부개정이 이루어진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기존의 2항은 3항으로 이동하고 2항에 자치구에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 전에는 제12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개정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내용이 변경 및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이 신설되었다.

2013년 3월 22일에는 법률 제11675호로 일부개정 되었는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0조(아동 보육·교육) 3항에서 아동의 언어발

달을 위한 교육을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까지 확대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에 의한 타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3년 3월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개칭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 용어가 변경되었다.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79호에서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총 4개의 법률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은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17조(과태료) 등으로 그 내용은 결혼이민자들에게 다국어에 의한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센터 설치·운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조항, 해체된 다문화가족자녀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2016년 6월 2일 법률 제13536호 일부개정에서는 제2조(정의)를 포함하여 제4조(실태조사), 제10조(아동 보육·교육) 등에서 대상을 아동에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기존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으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는 방문교육 비용에 대한 차등지원 기준 명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및 다양한 교육 참여 노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다.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604호 일부개정에서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의 근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제1조(목적),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호의2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것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에서 가족생활을 벗어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힘을 명시한다.

2016년 3월 2일 법률 제14061호 일부개정에서는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습과 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는 지원센터 업무 수행 비용을 포함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함을 명시하였다.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702호 일부개정에서는 제4조(실태조사) 3항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에서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5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현황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사항을 반영해야 함을 후단 신설하였다. 이는 당시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³⁾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수만큼 사회통합 목적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함에 따라 실태조사 사항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에서는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6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원의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그리고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는 2항을 신설하는

3) 교육부는 2015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및 진로교육 강화’를 내세웠으며 2016년에는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으로 공교육에 대한 진입과 적응을 목표로 하여 2015년과 달리 학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는다(교육부 2015: 2; 교육부 2016: 2).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와 관련 교육을 제공 및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다문화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공교육에서 교원의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이전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결혼이민자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81호 일부개정에서는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4항을 수정하였는데,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추가하고,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3항, 4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용어를 ‘방송사업자’로 변경한다. 그리고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항에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운영 업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 2008년 제정부부터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20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에서도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국인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다문화에 관련된 정의, 지원센터, 교육 등 다양한 부분을 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개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차를 시작으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의해 2차(2013~2017년), 3차(2018년~2022

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1년 4월 4일 법률 제10534호 일부 개정 및 2011년 10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가 신설되면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고 있다.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②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③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총 5가지 사항이다. 이 외에도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제3조의4(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어 부처와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대처가 미흡했다. 또한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만큼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였으며, 일반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내용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일차원적인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0: 4-5). 이러한 향후 과제를 안고 수립된 것이 제1차 기본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2010~2012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시

혜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면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취약 계층과 동일시하는 인식의 고착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2차 기본계획(2013~2017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능력을 기르고 한국문화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문화도 함께 배우도록 하여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에 그 방향성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은 1, 2차 기본계획에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와 달리 10년 이상 장기 정착 중인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주민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토대로 일반국민들과 다문화가족의 접촉경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한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도록 하였다.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현재 3차 진행 중에 있으며, 수립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슈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1, 2, 3차 기본계획의 내용과 변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3.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당시 당면한 문제의 극복

을 위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각 시기별 기본계획의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1.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지원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김영숙 외, 2012:86). 이러한 추진 내용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결혼이민자들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2001년 약 26만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여, 2010년에는 약 9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009년 5월 기준으로 인구의 0.3%(약 167,000명)를 차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같은 시기 약 103,000명을 달성하였다(여성가족부, 2010:1-3).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사회 문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 학습 능력 문제 등으로 발생하였다.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비해 대비가 미흡했던 한국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차를 수립하게 되었다(김준식 외 2012:136). 추진 과제는 크게 5개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이다.

3.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이 실시되는 시점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 과제에 연속성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3).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는 6개이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1.3.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까지 10~11%를 유지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2016년에 들어 7.3%까지 떨어지면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었다. 반면 혼인귀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한 중도입국자녀가 증가하고 향후 5년 내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고생 비중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5-8).

제3차 기본계획은 크게 5개의 추진 과제로 이루어졌는데, 다문

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등이다.

3.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변화 과정

여성가족부의 제1차, 2차,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시기를 태동기, 발달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였다.

제1차는 다문화사회의 ‘태동기’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자녀 출생, 자녀의 초기 발달, 가족생활 갈등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제2차는 ‘발달기’로, 국제결혼의 비율이 안정화되고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자녀세대가 성장하였으나 가족 해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산과 갈등이 우려되는 시기이다(여성가족부 2012: 25). 제3차는 ‘정착기’로, 국제결혼은 감소 추세이며 다문화가족의 안정화 및 장기정착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사회진출의 욕구가 증대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강화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학령기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가족의 유형 또한 한부모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 11).

이러한 시기에 따른 각 기본계획의 변화 과정을 정책 추진체계,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수용성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비교>

		1차	2차	3차
비전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①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②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①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②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①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②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③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 과제	정책 추진 체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책추진체계 정비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국제 결혼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과제에 포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과제에 포함)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안정적인 가족 생활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앞선 각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비전 부분에서는 1차에서는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비전을 설정했다면, 2차에서는 증가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3차에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확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 목표도 3차에 이르러서는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사회 전체의 목표로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정책 과제 분석

4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정책 추진 체계,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 수용성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 별로 1, 2, 3차의 정책 상세 내용을 비교하여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정책 추진 체계

정책 추진 체계 항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에서는 추진 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제2차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해 제3차에서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의 상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정책 추진 체계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 조정 기능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2차	정책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3차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제1차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첫 단계인 만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그와 관련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8-10). 이 시기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다문화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성과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은 주요 상대국과 관련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46-47). 제1차에서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한 것을 이어받아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은 다문화정책을 지원하는 부처 간, 주요 상대국 간의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 합동운동을 추진하고, 정책 방향 연계 등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 다문화가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5-16).

정책 추진 체계 과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추진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2차 모두 추진체계 정비 및 구축을 위한 과제는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정책 중복의 문제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재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정책의 경우 교육, 복지, 출입국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의 혼선과 중복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다문화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4.2. 국제결혼

국제결혼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 정비는 주로 국제결혼이 급증하던 시기인 제1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3차 기본계획에서

는 대과제에 직접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관련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서 국제결혼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3 국제결혼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강화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사전정보제공확대 - 자립가능 이민자 유입 위한 입국 전 검증 시스템강화
2차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피해자 보호
3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 관리를 강화하고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자립 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을 위해 입국 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11-13). 이러한 계획 하에 국제결혼 관련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의 결혼에 대한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결혼이민자 대상 사전 교육,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등을 도입하였고, 주요 국가 간 협력체를 구축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결혼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6-38).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지원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불법 결혼중개에 대한 실태감시 및 예방을 위하여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4).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결혼상대국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불법중개행위를 공수조사하고 불법소지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제결혼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2018년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실질적으로 업체가 아닌 개인업자나 불법업체와 같은 연결망을 통한 입국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의 경우 등록업체 대상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미등록된 중개업체들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미등록 중개업체의 피해 사례 역시 파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국제결혼의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등록업체에서는 연결이 실패할 시 환불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미등록 중개업체의 경우에는 연결이 실패하더라도 환불을 미루어 정신적·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 2018: 37).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중개업체 이용자에게 미등록업체를 이용할 시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려서 등록 중개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제1차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켜주고, 이러한 정착을 통해 제2차에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가족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3차에서는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였다.

<표 4 결혼이민자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지원 강화(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 - 안정적 사회통합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이혼 및 폭력 피해)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2차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일자리 및 사회 참여 확대 -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역량 개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 - 소외계층 지원 강화 - 피해자 보호
3차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 -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안정된 가족 생활 지원 - 서비스 연계 활성화

제1차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이다.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귀화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 지원과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이혼 및 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배우자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14-19). 그 결과로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도록 하고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라는 정책 과제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이라는 과제 아래,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맞춤 지원하고, 다누리 콜센터 운영,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6-40).

제3차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에서, 결혼이민자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조모임등을 지원하여 사회 활

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폭력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사례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개선, 생활안전 대응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다누리포털, 한국생활가이드북 등을 지원하여 정보 습득에 용이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3-19).

제2차, 3차 기본계획에서 그 과제명을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이라고 하고 있으나 결국 그 내용은 대부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결혼이민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내 갈등 발생의 주체를 ‘결혼이민자’로 여긴다는 우려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그 문제에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문화차이도 있지만, 세대차이, 자녀교육에서 오는 갈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4.4.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특히 유아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제2차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공교육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 학교생활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제3차에서는 성장한 그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온 만큼, 진로

및 사회 활동을 위한 지원과 새롭게 등장한 문제인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3차에 들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에도 포함해 그들의 인권, 피해 예방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표 5 다문화가족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언어 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 위한 인프라 확충
2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 및 기초학력 향상, 진학지도 강화 - 공교육 접근성 제고
3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언어발달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부적응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20-23). 이에 대한 성과로 자녀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언어 발달 및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여 언어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글로벌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중도입국 자녀 대상 특별학급 설치, 대학생 멘토링

등을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생활 초기 적응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진학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공교육 진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입학절차를 안내하고,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조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3-35). 이러한 계획에 대한 결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통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도 적응도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를 장려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공교육 진입 시기에 들어섬에 따라 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중언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며,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9-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지원의 핵심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이나 사업에 관한 재량권이 거의 없고,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이광원 2020: 88).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나, 지역단위의 정책 개선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지역별, 상황별 특수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재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4.5.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과 관련, 1차 시기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차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3차에서는 상호존중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다문화수용성 분야 정책 과제>

	정책과제	내용
1차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증진 위한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강화 - 지자체 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 대한 교육 확대 - 다문화이해 증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2차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문화,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조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문화 차별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학교의 다문화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3차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 다문화수용성 제고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제1차 기본계획의 과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이다.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24-26).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다문화시설,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대상별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련 매체 광고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8-9).

제2차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내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결혼이민자 입국 국가의 문화, 제도에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하여 방송에서도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이다. 국민의 다문화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방송 등에서 타 문화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차별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대상별, 학교, 장병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31-45).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기존과 유사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2012년 51.17에서 2015년 53.95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18: 2-3).

제3차 기본계획의 과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이다.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산하는 등 지역환경과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였다. 또한 부처 간 다문화이해교육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유아교육, 공교육기관, 교원, 일반국민 대상 등 다양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활발히 제공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2-24).

제1, 2, 3차 기본계획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12년부터 진행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2년에는 51.17점에서 2015년 53.9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에는 52.81로 오히려 하락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62). 이처럼 지속적인 교육 지원 정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 개선이 미진하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향상된다는 분석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 이주민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늘릴 수 있는 ‘무지개 다리사업’ 과 같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그 시기와 다문화가족의 변화양상에 따라 지원 및 과제가 변화하였다.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특성에 따라 여전히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는, 3차에 들어서는 다양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 따라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상호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등장하였다는 점

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있어 정책의 혼선이 있음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혜승(2010)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리더십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의 경우 사업조정이 미진하여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중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한국어 교육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제1차, 2차 모두 추진체계 정비 및 구축을 위한 과제는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정책 중복의 문제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재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제결혼 피해와 같이 사후관리적인 정책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1차 때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의 안전망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중개업체 단속 강화를 통한 국제결혼피해가 감소하고 있음을 3차 기본계획에서 보고하고 있지만, 2018년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업자와 불법업체를 통한 입국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미등록 중개업체 단속 강화, 미등록 중개업체를 이용 시 당할 수 있는 피해 알림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

입하는 방안 등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국제결혼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정책국 품질 관리과 2018: 38).

셋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제1~3차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결혼이민자 배우자 즉, 한국인에 대한 교육은 국제결혼 시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제외하고는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이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정책 과제에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족 해체 발생의 원인을 ‘결혼이민자’로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세대차이, 자녀교육,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화 갈등을 부부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 대한 교육 지원도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재량 확대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 사업 재량권이 없으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역과 상황에 맞춘 지역특성화 사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일 실정이다(이광원 2020: 88). 지역의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며, 그 효과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수용성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을 하여, 추후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8: 4). 특히,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작년보다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조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다문화정책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다문화가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보다 더욱 세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현재적 관점에 머물러 협소한 대상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미래로 그 시선을 확장시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종대 외 2014: 35).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은 다문화가족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 교육부(2016).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권오경(2018).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아시아 구비문학 활용방안,

- <국학연구총론> 21, 태민국학연구원. 9쪽~40쪽.
- 김영숙 외(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69쪽~103쪽.
- 김준식 외(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연구> 12(4), 경인행정학회. 127쪽~150쪽.
- 김혜순(2017).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조정부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1), 국회입법조사처. 31쪽~55쪽.
- 박종대 외(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8(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5쪽~63쪽.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2021), 2021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신은주(2012).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4), 경인행정학회. 325쪽~342쪽.
- 여성가족부(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이광원(2020). 한국 다문화 가족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3(1), 한국이민정책학회. 67쪽~90쪽.
- 이혜승(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5쪽~216쪽.
- 조현상(2013). 국가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27쪽~152쪽.
-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2018).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수시통계 품질진단 최종결과보고서.
- 홍규호(2017).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인터넷 자료>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s://www.edu4mc.or.kr/notice/note/view.html>(검색일자: 2022.01.06. 13:32)

필자 소개

성 명 : 권오경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 한국어문화학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61 센텀삼환아파트 104-1408
[우편번호] 48062
전자우편 : kok7352@hanmail.net

성 명 : 김남희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 kinegt5@gmail.com

성 명 : 김혜빈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 hyebin5180@gmail.com

투고일: 2022. 2. 20 / 심사일: 2022. 3. 20 / 심사완료일: 2022. 3. 25